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065
----------	------

발의연월일 : 2016. 10. 28.

발의자 : 김민기 · 전재수 · 오영훈
안민석 · 도종환 · 이원욱
김정우 · 윤후덕 · 장정숙
손혜원 · 이석현 · 정성호
김상희 · 김병욱 · 황주홍
윤관석 · 서영교 · 조정식
김현미 · 박영선 · 노웅래
의원(2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재청장이나 시·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화재 및 재난방지, 도난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문화재청장 등이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와 도난예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화재대응 지침서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재난이나 도난에 관한 지침서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는 실정임.

이에 지침서에 재난과 도난 대응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지정문화재의 재난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제2항).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화재대응”을 “화재, 재난 및 도난 대응”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생 략)</p> <p>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문화재별 특성에 따른 <u>화재대응</u> 지침서(이하 “지침서”라 한다)를 마련하고 이를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③ ~ ⑧ (생 략)</p>	<p>제14조(화재 및 재난방지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화재,</u> <u>재난 및 도난 대응</u>----- ----- ----- -----.</p> <p>③ ~ ⑧ (현행과 같음)</p>